

영등포구의회
제20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2017. 9. 1.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63호로 2017년 8월 29일 박미영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5조 ~ 안 제6조)
- 다.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 마련 및 사업 지원을 위한 양성평등 기금 사용(안 제7조)
- 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 위탁 운영(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2017. 7. 27. ~ 8. 4.)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되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 대하여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총 9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

-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로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수립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여성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 인턴취업지원 사업,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2016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력단절여성¹⁾은 2016년 4월 기준으로 190만 6천명이며, 이 중 서울시는 35만 1천명으로 전체의 18.4%를 차지하고 있음.

○ 여성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정책 필요성에 대한 설문 조사에 위하면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²⁾ 등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욕구는 매우 높은 편임.

1) 통계청 「2016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 만 15~54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

2)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4. 「서울시 여성일자리 종합계획 수립연구」

이러한 현실을 감안 할 때 경력단절여성등의 성공적인 재취업과 경력유지를 위해서는 지역, 개인의 인적특성, 희망 업종 및 직종 등에 따른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기업의 인력수요에 부합하는 직업훈련과 취업이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 련 법 령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함에 있어서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③ 사업주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0.1.18, 2010.6.4.>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력단절여성등의 현황과 전망
2.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주요 시책
3.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1.18., 2010.6.4., 2014.5.28.>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0.6.4.>

제9조(유망직종 선정·지원)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을 선정하고 그 직종에 여성이 진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0.6.4.>

제10조(직업교육훈련)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0.6.4.>

제11조(인턴취업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여성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인턴취업지원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12조(경력단절 예방)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직업의식과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개정 2012.06.21>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개정 2016.12.29.>
2. 제15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개정 2012.06.21., 2016.12.29.>
3. 양성평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개정 2016.12.29.>
4.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개정 2012.06.21>

제29조(기금의 관리·운영) ① 구청장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영한다.<개정 2012.06.21>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8조에 따른 의한 지원금은 기금의 이자수입금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하고, 결산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21>

④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본항신설 2007.04.05>